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80
----------	-----

제출년월일: 1999.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 인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골자

-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안 제2조제1항)
-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5조)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별표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1.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1979.7.27 조례 제952호>
 -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1987.8.7 조례 제1552호>
 -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1968.12.6 조례 제310호>
- ③ (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별표1]

수수료 징수 금액

(단위:원)

구 분	종 류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 중학교 배정수수료	1 통	3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73조, 제89조.
	○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 정수수료	1 통	300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보자 선정경쟁 시험수 료	○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선정경쟁 시험규칙 제19조 , 제21조
	- 일반시험 -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3)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고등학교입학자 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 -고등학교졸업학 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
	○ 성적증명서	1 통	300	
	○ 합격증명서	1 통	300	
	○ 과목합격증명서	1 통	300	
4) 제증명수수료	○ 신원에 관한 사항 - 재직·경력 및 퇴직에 관한 사항	1 건	300	지방자치법 제128조
	- 연수 및 이수 등에 관 한 사항	1 건	300	
	- 졸업(예정), 재학(제적), 성적등에 관한 증명	1 건	300	
	○ 회계에 관한 증명 - 납품 및 공사 사실에 관한 증명	1 건	300	
	- 원천징수등에 관한 사 항	1 건	300	
	○ 기타 공부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 건	300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령 제18조)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등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중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사본(중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를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를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켤(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시청 - 1컷마다 200원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마이크로 필름	0 열람 - 1권(10컷기준) 1회 : 500원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0 사본(출력물 :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0 복제 -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 진· 사진필름	0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0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0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0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1999-86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 (안 제2조 제2항 별표)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6조)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 (안 제8조 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 (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조항 신설 (안 제11조)

<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p>	<p>○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 제1항)</p> <p>○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제1항)</p> <p>○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5조)</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p>	<p>○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9,826,074,650원이며,</p> <p>○ 이월사업비65,461,237,320원, 순세계잉여금 56,905,543,670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000원으로서 총 122,377,928,99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p>	<p>○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88,152,000원, 사망조의금 446,485,000원, 직업교육확충비 61,575,610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51,833,000원, 수해복구지원비 31,953,000원, 손해배상금 26,635,000원으로 총806,633,610원을 지출하였음.</p>



“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편 361-703/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1) 272-0414/ 전송 (0431)271-8696
의사과장 : 안용균 / 의안담당 : 연승훈 / 기안자 :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263
시행일자 1999.08.28. (영구)
경유
발음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1999. 8. 28	결재	
	번호	4/282		
처리과	기획관리과		공람	
담당자				

제목 의안이송

1. 기관 81433-710('99.8.12)호의 관련입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104 -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4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원안가결
104 -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